

의안번호	2200759
의 퇴 인	박대출 의원
회 답 일	2024.7.3.
추계번호	24E1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4년 한시적으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2024년 656억원으로 추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1,960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단위: 억원)

	2024	2025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안 제109조의2)	-656 ¹⁾	-
개별소비세	-460	-
교육세	-135	-
부가가치세	-6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안 제126조의2②)	-	-1,960

주: 1) 2024년 8월 시행을 전제하여 5개월 분에 대하여 추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 10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13년 12월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자로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자 - 감면율 및 감면한도: 70%, 신차 1대에 한하여 100만원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5%	
2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및 상반기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 적용 - (현행)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 2024년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u>10%</u> 소득공제율(100만원 한도) 적용 - (개정안) 2024년 상반기(1.1.~6.3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u>80%</u> , <u>2024년 상반기</u> (1.1.~6.30.)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3년 상반기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u>20%</u> 소득공제율 적용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	
2	안 제126조의2제2항(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	
3	안 제126조의2제2항(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2024년 상반기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	미추계 (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 개정안이 2024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노후자동차의 대한 신차 교체비율은 2020년 특례 시행 시의 교체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제하되, 특례 적용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

○ 2020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신차 1대에 한하여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였음

- 2019년 6월 30일 기준 10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¹⁾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2020.1.1.~6.30.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한시 적용)

□ 노후자동차 교체로 구입하는 신차의 연료별(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 등) 비중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 동 감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중복 적용되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후 동 특례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세수효과를 구분하여 추계
 - 예를 들어,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판매가격 7,000만원인 전기자동차(300만원 한도)를 구입하는 경우, 본래 개별소비세 350만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에 따라 300만원이 감면되고, 남은 50만원에 대하여 동 특례(70% 감면, 100만원 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개별소비세는 15만원임

□ 신차 판매가격은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²⁾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4년 중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으로 세수효과는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5년에 발생

□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4.8%)로 증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1) 2017년, 2019년 당시 특례는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에는 경유자동차 외의 다른 노후자동차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하였음

2)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승용자동차 18%, 고급 가구 38.9%, 고급 모피 24.6%)만큼 경감하는 제도로서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한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안은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1) 추계 방법

(가)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

- 2020년 특례 시행 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실적 및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을 1.08%로 추산
 -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특례 대상 노후자동차(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는 5,591,029대이며³⁾, 이 중 특례를 적용받은 신차 수는 72,729대⁴⁾이므로, 교체비율은 1.3%로 추산
 - 2020년 당시 특례는 6개월간 적용되었으며,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5개월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교체비율을 1.08%로 가정

(나) 감면대상 자동차 수

- 개정안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되는 차령 10년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의 노후 승용자동차는 6,641,708대이며, 신차 교체비율 1.08%를 적용하여 신차 교체대수는 71,997대로 추산

3) 국토교통부, 2019년 6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4) 국세청 제출자료

[표 2] 차령 10년 이상 노후 승용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모델년도	관용	자가용	영업용	합계
~2003	90	617,893	427	618,410
2004	27	109,091	11	109,129
2005	45	185,307	13	185,365
2006	81	251,138	21	251,240
2007	167	436,008	27	436,202
2008	255	500,075	35	500,365
2009	621	553,713	30	554,364
2010	474	880,563	28	881,065
2011	693	985,704	32	986,429
2012	1,061	1,184,206	90	1,185,357
2013	1,110	932,421	251	933,782
합 계	4,624	6,636,119	965	6,641,708

자료: 2023년 12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최근 3년간(2021~2023년) 내수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3년간(2021~2023년) 내수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평균
가솔린	59.3	58.4	58.1	58.6
디젤	17.1	11.6	7.9	12.2
LPG	6.7	5.9	4.2	5.6
하이브리드	12.3	15.8	23.3	17.2
전기	3.9	7.5	6.1	5.8
수소연료전기	0.7	0.9	0.4	0.6

자료: 승용차 연료별 내수 통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 동향통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 이 중 경유차는 동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 및 신차 교체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연료별 승용자동차 비중 추정치(경유 제외)

(단위: %, 대)

구 분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기
비중(A)	66.7	6.4	19.6	6.6	0.7
대수(A×71,997)	48,022	4,608	14,111	4,752	5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세수효과 추정

- 신규등록하는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
 - 2023년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내수 판매실적⁵⁾ 1~10위의 평균 공급가액임
 - 판매실적에 따른 가중치 적용
 - 단, 각 모델별 기본모델 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소 추계되었을 수 있음

[표 5] 연료별 승용자동차 평균 공급가액

(단위: 만원)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기
2,841	2,586	3,224	4,871	6,2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 경감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연료별 신차 1대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산출
 - 개별소비세 감면액 = 과세표준 × 5% × 감면율 70%
 - 친환경차의 경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한도액(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연료전기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
 - 교육세 감면액 = 개별소비세 감면액 × 30%
 - 부가가치세 감면액 =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액) × 10%

5) 자동차통계월보(2023년 12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표 6] 연료별 승용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액

(단위: 만원)

구 분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기
공급가액(A)	2,841	2,586	3,224	4,871	6,248
과세표준(B=A×82%)	2,330	2,121	2,644	3,994	5,123
개별소비세(C=B×5%)	116	106	132	200	256
친환경차 감면특례 적용 후 개별소비세(D)	116	106	32	—	—
개별소비세 감면액 (E=D×70%)	82	74	23	—	—
교육세 감면액 (F=E×30%)	24	22	7	—	—
부가가치세 감면액 (G=(E+F)×10%)	11	10	3	—	—
세수효과 합계 (H=E+F+G)	117	106	32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전체 세수효과는 신차 1대당 감면액에 감면대상 연료별 신차 대수를 적용하여 추계

[표 7] 연료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액

(단위: 억원)

구 분	가솔린 (48,022대)	LPG (4,608대)	하이브리드 (14,111대)	전기 (4,752대)	수소연료전기 (504대)	합계
개별소비세	394	34	32	—	—	460
교육세	115	10	10	—	—	135
부가가치세	53	5	4	—	—	62
합계	562	49	45	—	—	6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결과

- (재정수입 변화)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신규등록 이후 10년 이상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 구입 및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감면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4년 6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4년

(단위: 억원)

		2024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안 제109조의2)		-656
	개별소비세	-460
	교육세	-135
	부가가치세	-62

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1) 감면 실적

□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3조 1,675억원임⁶⁾

- 2021년 실적은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으로, 2020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조세지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표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실적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조세지출액	18,444 (3.1)	18,537 (0.5)	21,176 (14.2)	22,553 (6.5)	24,698 (9.5)	31,882 (29.1)	31,675 (-0.6)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6) ① [표 2] 기준 ① 2018년(2017년 귀속)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
 ② 2019년(2018년 귀속)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
 ③ 2021년(2020년 귀속)에는 2020년 3월과 4월~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80%, 80%의 공제율을 적용(기존 15~40%)하고,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
 ④ 2022년(2021년 귀속)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15~40%)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 공제율 추가 적용

(2) 추계 방법

□ (추계 방법) 총급여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 2021년 귀속 총급여규모별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인상분(20%p) 및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 연간 총급여규모별 전통시장 사용액이 월별로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연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전년도보다 20%p 높은 60% 공제율(상반기 사용분 80%, 하반기 사용분 40%) 적용하여 추계
 - －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공제율 변경에 따른 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 기본 공제한도 초과액, 기본 공제한도 초과분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전통시장 및 도서·공연비 등 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료의 한계로 총급여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인당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분(20%p)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2021년(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은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4.8%)로 증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⁷⁾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10] 기준연도 이후 세수효과 증가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소비자물가상승률 (A)	2.5	5.1	3.6	2.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B)	5.0	5.4	4.8	4.8
합계 (A+B)	7.5	10.5	8.4	7.2

주: 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까지는 실적치, 2024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3.10.)의 전망치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은 2022년까지 실적치, 2023년부터 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4.8%) 사용

(3) 추계 결과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할 경우 소득세수 2021년 기준 1,4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7) 2023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3.10.)의 전망치 활용

[표 11]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2021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국세통계연보		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 ³⁾	1인당 추가공제액	현행 1인당 과세표준	한계세율 (%)	세수효과 (억원)
	총급여인원 ¹⁾	신용카드 공제인원 ²⁾					
	A	B	C	$D=C \times 20\%p$	E	F	$G=-(D \times F) \times B$
합계	12,919,174	8,467,622	—	—		—	-1,484.3
1천만 이하	8	0	—	—	4.5	6%	—
1.5천만 이하	184,199	2,751	0.15	0.03	5.2	6%	0.0
2천만 이하	867,728	144,342	0.24	0.05	7.2	6%	-4.1
3천만 이하	2,936,591	1,406,968	0.36	0.07	11.2	6%	-60.5
4천만 이하	2,143,540	1,472,851	0.40	0.08	17.2	15%	-178.5
4.5천만 이하	913,909	714,454	0.44	0.09	21.8	15%	-94.4
5천만 이하	794,778	651,640	0.48	0.10	25.0	15%	-94.4
6천만 이하	1,292,226	1,097,340	0.54	0.11	30.3	15%	-177.6
8천만 이하	1,688,829	1,435,358	0.61	0.12	41.4	15%	-261.8
1억 이하	975,425	794,034	0.67	0.13	58.7	24%	-254.1
2억 이하	976,325	698,061	0.68	0.14	96.2	35%	-333.6
3억 이하	92,291	39,761	0.65	0.13	199.0	38%	-19.7
5억 이하	35,865	8,372	0.67	0.13	327.9	40%	-4.5
10억 이하	12,980	1,429	0.71	0.14	605.4	42%	-0.9
10억 초과	4,480	261	0.77	0.15	1,939.8	45%	-0.2

주: 1)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총급여 인원으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만을 포함

2)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는 인원으로, 그 인원이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함

3)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전통시장 사용 인원으로 나눈 금액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에 2021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2024년 귀속 기준(2025년 연말정산 시 세수효과 발생) 세수효과는 -1,9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년

(단위: 억원)

	2025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안 제126조의2②)	-1,96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어수진	박연서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어수진	02-6788-4745	sjeo1993@assembly.go.kr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